

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

의안 번호	123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8년 3월 일

제출자 : 제천시장

1. 제안이유

「장애인복지법」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복지증진 책임실천과 같은 법 제63조에 규정된 장애단체의 보호육성을 위해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(안 제2조)
 - ▶ 재원 : 출연금 +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
 - ▶ 기금의 존속기한 : 5년(2012년 12월 31일까지)
-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의 용도(안 제3조)
 - ▶ 장애인단체의 육성·지원사업 등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
- 기금의 관리·운용(안 제4조)
 - ▶ 운용기금은 기금의 중식을 위하여 이자의 10퍼센트 금액 이상을 재적립
-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구성(안 제5조)
 - ▶ 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
- 위원회의 기능(안 제6조)
 - ▶ 기금의 조성 및 관리·운용계획에 관한 사항
 - ▶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- ▶ 기타 기금운용과 관련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

3. 의안전문 : 불임

4. 관계법령 : 불임

- 「장애인복지법」 [개정 2007. 10. 17 법률 제8652호]
- 「지방자치법」 [일부개정 2007. 5. 17 법률 제8435호]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」 [일부개정 2007. 5. 11 법률 제8423호]

첨 부 1. 의안전문 1부.

2. 관련법령 1부.

3.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 사본 1부.

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금의 조성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시 출연금
2.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
3. 기타 수익금

② 제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

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3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.

1. 장애인단체의 육성·지원사업
 2.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재활·자립 지원사업
 3. 장애인의 지역사회활동 참여와 지도를 위한 사업
 4.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.

제4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 계좌를 설치 관리한다.

② 운용기금은 당해연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(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범위 내에서) 지출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이자의 10 퍼센트 금액 이상을 적립금으로 재적립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② 위원회는 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.

제6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의 조성 및 관리,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
2.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기금의 지원대상자 및 사업선정 또는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기금운용과 관련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

제7조(회계관계 공무원)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·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둈다.

- ② 기금운용관은 경로재활팀장으로 하고,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자로 한다.
-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운용·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중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8조(결산 및 보고)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(관계규정의 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는 「제천시 재무회계 규칙」이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 법령

장애인복지법

[개정 2007.10.17 법률 제8652호], 시행일 :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

제9조 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,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,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,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,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53조 (자립생활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,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63조 (단체의 보호·육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돋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·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지방자치법

[일부개정 2007.5.17 법률 제8435호], 시행일 2008.1.1,

제142조 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③ 제1항에서 "재산"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[일부개정 2007.5.11 법률 제8423호]

제4조 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.

제6조 (기금의 관리 및 운용) ① 기금은 세계현금(세계현금)의 수입·지출·보관의 절차,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·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

한다.

제8조 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

[제정 2005.12.28 대통령령 제19197호]

제3조 (기금의 존속기한) ①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.

②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

제4조 (기금의 수입과 지출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,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.

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7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)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인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천시 공고 제 2008 - 2호

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08. 01. 02.

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입법예고

1. 조례명 :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2. 제정이유

「장애인복지법」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복지증진 책임실천과 같은 법 제53조에 규정된 장애단체의 보호육성을 위해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(안 제2조)
 - ▶ 재원 : 출연금 +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
 - ▶ 기금의 존속기한 : 5년(2012년 12월 31일까지)
-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의 용도(안 제3조)
 - ▶ 장애인단체의 육성 · 지원사업 등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
- 기금의 관리 · 운용(안 제4조)
 - ▶ 운용기금은 기금의 종식을 위하여 이자의 10퍼센트 금액 이상을 재적립
-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구성(안 제5조)
 - ▶ 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
- 위원회의 기능(안 제6조)
 - ▶ 기금의 조성 및 관리 ·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
 - ▶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- ▶ 기타 기금운용과 관련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

4. 의견서 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08년 01월 22일까지 제천시장(참조 경로재활팀장)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연락처 641-5712~3, FAX 641-5729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사유)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, 주소
- 기타 참고사항 등

★지방행정주사	경로재활팀장				

조례제정 및 개정안 입법예고 결과보고

제천시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정 및 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에 대하여 공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.

1. 입법예고 조례명

- ▶ 제천시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정(안)
- ▶ 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2. 공고번호 : 제천시공고 제2008-2호, 제천시공고 제2008-3호

3. 공고기간 : 2008. 1. 2 - 1. 22(20일간)

4. 공고매체 : 제천시보 및 제천시홈페이지(입법예고)

5. 공고내용 : 별도붙임

6. 공고결과

- 조회수 : 92명
- 의견제시자 : 없음

붙임 : 공고안 1부(별지), 끝

보고자 : 행정 6급 이 규 철

제천시장 귀하